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및 가맹본부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69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제한 규정 삭제	3
2.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8
3. 가맹본부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14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범위 확대	20
5. 해지절차 위반 및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에 대한 형벌규정 도입 ...	24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6. 24.
-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에 한정하여 보장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이 사문화되며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처럼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함(제13조제2항).
- 나.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제2항).
- 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37조의2제2항).
- 마. 가맹본부가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41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제한 규정 삭제

□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생략) ② <u>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u> ③·④ (생략)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 ③·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3조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 2002년 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본부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면 그 가맹계약은 종료되고,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가맹점사업자가 투자자본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2007년 동법 개정을 통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여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제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지속적인 거래를 예상하여 투자한 자본을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정 전후 제13조 조문 비교 >

개정 전 (법률 제6704호, 2002. 5. 13., 제정)	개정 후(현행법) (법률 제8630호, 2007. 8. 3., 일부개정)
제13조 (가맹계약 종료사실의 통지 등) ①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전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제13조 (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

1) 헌법재판소도 구 법률 하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맹본부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맹계약은 종료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재 2011. 6. 30. 2009헌마582,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이 가맹점사업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개정 전 (법률 제6704호, 2002. 5. 13., 제정)	개정 후(현행법) (법률 제8630호, 2007. 8. 3., 일부개정)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가 10년이 초과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의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등 계약갱신을 무기로 불이익을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음.²⁾

□ 이에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10년 동안만 인정되던 계약갱신요구권을 기간 제한 없이 인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가맹계약기간이 10년에 이르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부당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등 가맹점사업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임으로써 가맹점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계약갱신요구의 거부가 당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 일반

2)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 가맹본부가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가맹본부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 가맹본부가 매장점검을 통해 발견한 계약 위반사항을 기초로 계약종료에 나아간 일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제공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함.

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한 바 있음.³⁾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시에도 계약자유 원칙의 제한이라는 이유로 논쟁이 있었고, 지속적 거래 관계를 전제로 초기 자본이 투자되는 여러 영역 중 가맹거래에만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는 점에서,⁴⁾

존속 기간의 삭제는 사적 자치에 대한 과도한 제한 여부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제2항) 상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 내에 행사 가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사업자간 지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나 별도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음.

2.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 절차로서 신고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약을 정하고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u> <u>1. 목적</u> <u>2. 명칭</u> <u>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u> <u>4. 구성원의 자격</u> <u>5.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u> <u>6.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u> <u>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u> <u>8. 해산에 관한 사항</u> <u>9. 규약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u> <u>10.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단체</u>

현행	개정안
	<u>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②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u> ③ <u>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구성원의 수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항에 따라 정한 규약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④ <u>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⑤ <u>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고서(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된 신고서를 말한다)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u> ⑥ <u>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u> ⑦ <u>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권 및 협의 요청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삼아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신고·수리 절차 등이 없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 현행법 제14조의2 내용 >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또한, 현행법 제14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르면, 복수의 사업자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를 판단할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특히, 현행법상 이와 같은 신고 및 공인절차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도 정확한 가맹점사업자단체 현황(단체 수, 가입 가맹점사업자 수 등)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⁵⁾

5) 현재 공정위에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61개의 영업표지별 가맹점주협

□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를 경우, 신고제라는 공적절차를 통해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어 단체의 법적지위 및 협상력 제고로 가맹본부와 사업자단체 사이의 협의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사업자단체의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본부에 우선협상대상 단체 선정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신고제보다 등록제가 좀 더 공적 확인의 정도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⁶⁾

□ 한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외에 시·도지사도 가맹사업자단체 신고기관으로 정하는데, 이는 가맹사업자단체 신고의 수월성·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수행을 위한 정보공개서

의회의 연합단체일 뿐, 협회회의 각 회원사별 상세 현황이나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단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음.

6) 참고로, 단체와 관련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음.

등록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며, 분쟁조정에 관하여도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참고⁷⁾할 필요도 있음.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가 일관성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업무지침 등을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의 경우 신고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정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신고서 교부의 법적 기한 등 등록 구체적인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실제 법 집행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회의 설치) ①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협회를 둘 수 있다.

3. 가맹본부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 개정안은 가맹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규정(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2항,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u>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u> <u>② (생략)</u> <u>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u>	<u>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삭제></u> <u>① (현행 제2항과 같음)</u> <u>② 제1항에-----</u> <u>-----정당한</u> <u>이유 없이 그 협의 요청을 거부</u> <u>하여서는 아니 된다. -----</u> <u>-----</u> <u>-----</u> <u>-----</u> <u>-----</u> <u>협의하고, 소수의 가맹점사업자</u>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략)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33조(시정조치) ① -----

-----제14조의3제2항·제4항-----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
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과징금) ① -----

제14

조의3제2항 · 제4항-----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typical of primary-ruled notebook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②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4조의2⁸⁾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대해 성실하게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가맹본부가 무응답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⁹⁾

‘2023년 가맹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¹⁰⁾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 주요 협의내용은 주로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①신메뉴·신제품 출시 및 상품 리뉴얼(26.1%), ②가맹점 운영정책 협의(20.8%), ③광고·판촉행사 등 협의(20.2%), ④영업정책 공유(18.5%) 등임.

8)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9)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개별 가맹점주 중 54.3%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으며, 이중 약 53.1%(전체 29.0%)의 가맹점주가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협의 요청 불응 사유를 주로 무응답, 회원명부 요구, 다른 가맹점단체와의 교섭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10) 2023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공정거래위원회, 2023.12.27.)

이러한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당수는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보임에도 협의를 위한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안 제14조의2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시정조치 및 과징금)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른 경우, 현행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빈번히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 간 의견 충돌로 효율적인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맹본부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의 요청에 대해서만 협의 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만으로도 가맹점주단체의 협상력이 상당 부분 제고될 수 있어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법적 제재를 통해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며,
올해 12월부터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¹¹⁾가 시행될 예정인바,
이를 통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제고되고, 자발적인 협의 문화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1)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올해 12월 5일부터 동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범위 확대

□ 개정안은 3배 이내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이루어지는 대상 행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금의 예치를 요구하는 등 총 13개 행위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생략)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u>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u>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u>제6조의5,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까지, 제13조 또는 제14조를</u> ----- ----- ----- -----. ----- -----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정보 제공¹²⁾, 상품 공급 등의 부당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한 중단·거절¹³⁾, 보복조치¹⁴⁾를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⁵⁾.

- 가맹본부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위법행위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¹⁶⁾가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인 실손보상의 예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의 확대 적용이 과도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용역의 공급이나 경영·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6) 징벌적 손해배상, 즉 배액배상(multiplied damages)이란 일정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하여 실제로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손해보다 넓은 범위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의미하며, 위법행위를 민사적인 수단을 통하여 억제하려는 것이 그 취지임.

보임.

- 개정안에 따른 경우 현행법상 시정조치 대상 행위 중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법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광범위하다 볼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 확대 사항>

구분		내 용	현행	개정안	시정조치
제6조의5		·부정한 예치가맹금 지급 요청 등	X	○	○ *제1항·제4항
제7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X	○	○ *제3항
제9조	제1항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	○	○
	제3항 ~ 제6항	·서면제공 위반(3항 및 5항) ·산출근거 자료 비치의무 위반 등(4항) ·5년 보관의무 위반(6항) 등	X	○	X
제10조		·가맹금 반환 의무 위반	X	○	○ *제1항
제11조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위반 등	X	○	○ *제1항·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맹본부의 부당한 상품등 공급 중단·거절·제한	○	○	○
	제2호 ~ 제6호	·구속조건부 거래(2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3호)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5호)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6호)	X	○	○
제12조의2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X	○	○
제12조의3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X	○	○
제12조의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X	○	○
제12조의5		보복조치 금지	○	○	○
제12조의6		광고·관측행사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X	○	○ *제1항
제13조		정당한 사유 없는 가맹계약 갱신 거부	X	○	X
제14조		부당한 가맹계약해지	X	○	X

- 참고로, 국내에서는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법 위반행위에 대한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이 처음 도입되었으며, 개별법에 구체적인 도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주요 법률 현황 >

소관부처	법률	대상행위	면책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부당한 공동행위, 보복조치	O
	하도급법	기술자료 유용 금지,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감액, 보복조치	O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 2019년 4월)	부당감액, 부당반품, 종업원사용금지, 보복조치	O
	대리점법	구입강제, 경제적이익 제공 강요, 보복조치	O
	가맹사업법	허위·과장정보제공, 상품 공급 등의 부당한 중단·거절, 보복조치	O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제조물책임법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X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고의·중과실 기한 개인정보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O
금융 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고의·중과실에 기한 개인신용정보누설·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O

- 공정거래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법상 실손전보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이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해지절차 위반 및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에 대한 형벌규정 도입

- ☐ 개정안은 가맹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거나 법상 해지절차(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통지)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1조(벌칙) ① <u>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u>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u><신설></u>	제41조(벌칙)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 1. <u>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u> 2. <u>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자</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 개정안은 현행법 제14조제1항17)에 따른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절

17)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가맹계약해지에 대하여 형벌(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른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취지로 보임.

□ 다만, 부당 거래거절의 경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시(2021. 12. 30. 시행) 벌칙규정을 삭제한 바 있으므로, 법령 간 정합성 차원에서 현행법상 부당 가맹계약 해지에 대해 형벌을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¹⁸⁾

- 아울러 현행법 제14조제2항¹⁹⁾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위배하는

18) 부당 거래거절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현재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은 공정거래법의 특칙으로 기능하고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인 경우

19)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벌 부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형벌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대한 제한이 크므로, 벌칙조항 신설을 통한 동 행위의 억제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하고, 계약해지절차에 대한 사항의 경우 전형적인 민사법을 통해 규율되는 영역으로 이를 형벌을 통해 제재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4